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88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최기상・이기헌・박상혁

김한규 • 백승아 • 정성호

허종식 • 조승래 • 김성환

김우영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등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 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죄(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제3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9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제1항 중 "事實"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한다. 제312조제1항 중 "第308條와 第311條"를 "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9조제1항 및 제3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307條와 第309條"를 "제307조제2항과 제30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07條(名譽毀損) ①公然司 <u>事實</u>	第307條(名譽毀損) ①
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	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	
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① <u>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u>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9조제1항 및 제311조
수 있다.	.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② <u>제307조제2항과 제309조제2</u>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	<u> </u>
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